

세무 뉴스

조세행정법 및 조세행정법
여러 규정의 안내를 위한
제126/2020/ND-CP호 시행령
의 시행을 위한 제80/2021/TT-
BTC호 시행 규칙

2021년10월19일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배경

2021년 9월 29일에 재무부는 조세행정법의 여러 조항 및 제126/2020/ND-CP호 시행령의 실행을 안내하는 제80/2021/TT-BTC호 시행 규칙을 발행하였다. 제80호 시행 규칙의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금의 신고, 계산 및 안분
- 납부세액, 연체이자 및 벌금의 처리
- 세금 환급, 면제, 감면 절차
- 납세자 정보
- 세무조사
- 전자상거래 사업(" 전자상거래 "), 디지털 기반 사업 및 베트남 내 외국 공급업체의 기타 서비스에 대한 세무 관리

본 시행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 Deloitte Vietnam은 고객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세무 규정 준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80호 시행 규칙의 주목할만한 내용을 업데이트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무 뉴스

조세행정법 및 조세행정법
여러 규정의 안내를 위한
제126/2020/ND-CP호 시행령
의 시행을 위한 제80/2021/TT-
BTC호 시행 규칙

2021년10월19일



제80호 시행 규칙의 주목할 만한 사항

부가가치세 ("VAT") 신고

생산시설이 있는 종속 지점에 대한 VAT 금액 할당

- 생산시설이 위치한 성에 납부할 VAT 총액이 본사에서 납부할 총 VAT 세액을 초과하지 않음

생산시설이 위치한 성에 납부해야 하는 VAT 금액 = VAT이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 (x) 2%(VAT 10%세율이 적용된 물품의 경우) 혹은 1%(VAT 5%세율이 적용된 물품의 경우)를 곱한 값임

- 생산시설이 위치한 성에 납부할 VAT 총액이 본사에서 납부할 총 VAT 세액보다 많은 경우

각 지역별 VAT 납부 금액은 (=) 본사 납부 VAT 금액 (x) 납세자가 생산한 제품의 VAT별도 총매출액에서 각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VAT별도 매출액의 비율(%)을 곱한 값임

- 할당 비율을 결정하는 매출액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실제 매출액이다.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른 내부 단위로 이전하는 경우 제조 제품의 매출액은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 추가 신고로 인해 실제 발생하는 매출액이 변경될 경우 납세자는 각 지역에 대한 과소 할당 또는 초과 할당된 VAT 차액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 신고된 오류가 있는 각 과세 기간의 미지급 세액을 결정하고 재할당해야 한다.

생산시설인 종속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납세자는 VAT을 신고하고 신고 서류를 직접 관리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생산 시설이 위치한 각 지역에 할당된 VAT 금액을 납부한다.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종속 지점의 경우 종속 지점이 자체적으로 등록된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거나 납세자가 종속 지점을 관리하는 세무당국에 등록된 계산서를 사용하고 매입 및 매출 VAT를 충분히 회계처리하면 종속 지점은 직접 관리 세무당국에 VAT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세무 뉴스

조세행정법 및 조세행정법
여러 규정의 안내를 위한
제126/2020/ND-CP호 시행령
의 시행을 위한 제80/2021/TT-
BTC호 시행 규칙

2021년10월19일



제80호 시행 규칙의 주목할 만한 사항

법인소득세 ("CIT") 신고

생산시설인 종속지점에 대한 CIT 금액 할당

- 생산 시설이 위치한 각 지역의 CIT 납부 금액은 (=) 생산 및 사업 활동의 CIT 납부 금액에 (x) 총 비용 대비 각 생산 시설 비용의 비율(%)을 곱한 값이다. (CIT 인센티브 자격이 있는 활동 비용 제외)
- 할당 비율을 결정하는 비용은 과세 기간에 발생한 실제 비용이다.
- 생산 및 사업 활동의 CIT 납부액은 CIT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 활동에 대한 CIT 를 제외한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 활동의 CIT 납부 금액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활동의 성과와 인센티브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생산시설인 종속지점에 대한 CIT 신고, 확정신고 및 납부

분기별 세금의 일시적 신고, 납부: 납세자는 분기별 세금 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일시적 납부하는 세액을 결정하여 생산 시설이 위치한 각 지역에 CIT를 납부해야 한다.

CIT 확정신고:

- 납세자는 직접 관할 세무당국에 모든 생산 및 사업 활동에 대한 CIT를 확정신고 해야 하며, 생산 시설이 위치한 각 지역에 할당된 세액을 납부한다;
- 특히 CIT 인센티브를 받는 활동의 경우 세금 확정신고는 직접 관할 세무 당국에서 수행해야 한다. CIT 인센티브를 받는 활동에 대한 납부할 CIT 금액은 양식에 따라 신고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위치한 세무당국과 관할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분기별로 일시적 납부액이 과세확정에 따라 각 지역에 할당된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 미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분기별 일시적 납부액이 각 지역에 배정된 세액보다 많을 경우 납세자는 과납부 세액을 확인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세무 뉴스

조세행정법 및 조세행정법
여러 규정의 안내를 위한
제126/2020/ND-CP호 시행령
의 시행을 위한 제80/2021/TT-
BTC호 시행 규칙

2021년10월19일



The Alert is prepared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제80호 시행 규칙의 주목할 만한 사항

과납세액, 연체이자 및 벌금 처리 절차

과납세액, 연체이자, 벌금 (과납부 금액) 처리

과납세액의 경우, 납세자는 (i) 미납세금, 연체이자, 벌금(미지급액)과 상계하거나 (ii) 다음 기간에 발생하는 세금, 연체이자 및 벌금(미납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 초과 납부 금액 (1)을 동일한 세무당국에 제출된 동일한 경제적 내용(세부 항목)의 미지급 금액과 상계한다;
- 초과 납부 금액 (2)를 동일한 세무당국에 제출된 동일한 경제적 내용(세부 항목)의 발생할 금액과 상계한다;
- PIT 확정신고를 고용인에게 위임한 개인의 초과 납부 PIT에 대해, 고용인은 상기 원칙 (1) 및 (2)에 따라 상계한다. 확정신고시 초과 납부된 PIT 금액은 (=) 개인의 과납부세액 (-) 나머지 납부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다. 고용인은 PIT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개인에게 과납한 PIT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과납부 세액이 외화인 경우 상계할 과납세액을 결정할 때 Vietcombank 당일 판매 환율에 따라 VND로 환산하여야 한다.

환급, 상계에 의한 환급: 상기 규정에 따라 상계한 후, 과납부 금액이 아직 남아있거나 미납 금액이 없는 경우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환급 또는 기타 조세 채무를 상계하여 환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과납세액, 연체이자 및 벌금 상계 절차

- 세무당국의 조세행정 시스템은 상기 (1)과 (2)의 경우를 자동으로 상계한다. 세무당국은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납세자는 다른 납세자와 동일한 경제적 내용(세부 항목) 및 동일한 예산 징수 영역의 미지급금 및 발생될 세액을 과납부 금액으로 상계할 경우 세무 당국에 상계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세무 뉴스

조세행정법 및 조세행정법
여러 규정의 안내를 위한
제126/2020/ND-CP호 시행령
의 시행을 위한 제80/2021/TT-
BTC호 시행 규칙

2021년10월19일



The Alert is prepared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제80호 시행 규칙의 주목할 만한 사항

세금 환급 절차

납세자는 다음에 대해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
- 특별소비세 환급
- 이중과세협정 및 국제조약에 따른 세금 환급

세금 환급 신청 구분 및 접수

- 납세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세무당국에 세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세무당국의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 문서 제출
 - ✓ 세무당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
- 납세자가 세금 환급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양식에 따른 서면 취소 요청서를 작성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세무당국이 환급 전 조사 결정을 공표한 경우 납세자는 신청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 본 시행 규칙은 세금 환급 전 조사대상 서류 6가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환급 후 조사 대상 서류는 이 6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이다.

세금 환급 서류 처리에 대한 일부 원칙

- 세금 환급 서류 검토 시:
 - ✓ 환급 대상으로 결정된 세액에 대해 납세자는 전체 세금 환급 서류의 검증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 확인, 평가 또는 추가 설명이 필요한 세액에 대해 규정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 납세자가 체납세금, 연체이자, 벌금 및 기타 체납 금액이 있는 경우, 이러한 체납 금액과 환급 세액을 상계한다.(상계에 의한 환급).

세무 뉴스

조세행정법 및 조세행정법
여러 규정의 안내를 위한
제126/2020/ND-CP호 시행령
의 시행을 위한 제80/2021/TT-
BTC호 시행 규칙

2021년10월19일



제80호 시행 규칙의 주목할 만한 사항

상호협약절차(MAP) 적용

이중과세협정에 따른 상호협약절차(MAP) 적용

- 베트남 거주자로 간주된 납세자가 외국 세무당국의 처리로 조세협정(APA에 대한 MAP 미포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되거나 납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MAP 적용 요청서를 세무총국에 제출할 수 있다.
- 외국 거주자인 납세자가 거주하는 외국 세무당국에 MAP 적용요청서를 제출한다.
- MAP 신청 서류는 본 시행규칙 제62조 4항에 규정되어 있다.

세금 면제 및 감면을 위한 신청서류 제출 기한

- 제출 기한은 최종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임; 심사가 필요한 경우 최종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0일임.

서류 처리 결과

- 세무당국은 면제 및 감면에 관한 결정을 내리거나, 면제 및 감면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혹은 세금 협정 또는 기타 국제 조약에 따라 세금 면제 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 뉴스

조세행정법 및 조세행정법
여러 규정의 안내를 위한
제126/2020/ND-CP호 시행령
의 시행을 위한 제80/2021/TT-
BTC호 시행 규칙

2021년10월19일



제80호 시행 규칙의 주목할 만한 사항

세무조사

세무당국에서 세무조사 수행

- 납세자 정보는 3개의 위험 수준(Low, Medium, High)으로 분류된다. 고위험에 대해서 세무당국은 세무서에서 세금 서류를 조사하고 다음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 ✓ 납세자가 신고세액이 정확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세금 신고서가 승인된다.
 - ✓ 납세자가 신고세액이 정확하다고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세무당국은 세금 부과지 근거가 충분 있으면 납부세액을 부과한다. 세금 부과지 근거가 부족한 경우,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사업장에서 세무 조사를 위한 결정서를 통지하거나,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조사 및 감사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 ✓ 납세자가 정보 및 서류를 설명·보완하였으나, 세무당국이 조세행정위반을 결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행정위반사항을 기록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연간 세무조사 계획 및 주제 공개

- 관할기관의 연간 세무 감사·조사 계획 및 주제(이후 개정사항 포함)는 세무당국 사이트에 공개되거나 결정 승인 또는 개정안을 발표할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자의 관할 세무당국에 통보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해야 한다.

납세자의 사업장에서 세무조사 수행

- 납세자 사업장에서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정보기술 적용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면 세무당국이 납세자 사업장에서 세무조사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 뉴스

조세행정법 및 조세행정법
여러 규정의 안내를 위한
제126/2020/ND-CP호 시행령
의 시행을 위한 제80/2021/TT-
BTC호 시행 규칙

2021년10월19일



제80호 시행 규칙의 주목할 만한 사항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한 세무 관리

해외 공급자가 베트남 내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활동, 디지털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세무 관리

- 베트남의 세금 등록절차(예: 전자세금거래 등록, 세금 코드, 세금 신고, 세금 계산 및 납부 등록)에 대해, 해외 공급자가 직접 하거나 다른 베트남 당사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대신 이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거나, 혹은 직접 수행하다가 추후 베트남 당사자가 계속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다.
- 해외 공급자는 분기별로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의무가 있다. 직접 산정 방식에 따라 다음 같이 VAT 및 CIT를 납부하여야 한다.
 - ✓ VAT 과세매출액은 해외 공급자의 수취 매출액이다. VAT 산정을 위한 VAT율은 2013년12월18일 제 209/2013/ND-CP호 시행령 제8조 제2항 b에 규정되어 있다;
 - ✓ CIT 과세매출액은 해외 공급자의 수취 매출액이다. CIT 산정을 위한 CIT율은 2013년12월18일 제 218/2013/ND-CP호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 해외 공급자가 세무신고 및 계산을 위하여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요구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 베트남 내 단체(개인)의 결제 및 베트남에 거주상태의 정보 또는 베트남 내 기관 또는 개인의 액세스 상태를 포함한 2개의 비충돌정보를 이용함;
 - ✓ 단체나 개인의 결제정보를 수집할 수 없거나 다른 정보와 상충되는 경우, 해외 공급자는 베트남 내 단체 또는 개인의 거주 상태의 정보 및 액세스 상태 정보를 포함한 2개의 비충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세무 뉴스

조세행정법 및 조세행정법
여러 규정의 안내를 위한
제126/2020/ND-CP호 시행령
의 시행을 위한 제80/2021/TT-
BTC호 시행 규칙

2021년10월19일



제80호 시행 규칙의 주목할 만한 사항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한 세무 관리

해외 공급자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베트남 단체 및 개인의 책임

- 베트남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단체 및 베트남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등록된 단체(베트남 당사자)가 베트남에 등록·신고·납부하지 않는 해외 공급자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해외 공급자를 대신하여 물품을 유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베트남 당사자가 2014년 8월 6일 재무부의 제 103/2014/TT-BTC 호 시행규칙에 따라, 해외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할 책임이 있다;
- 개인이 베트남에 등록·신고·납부하지 않는 해외 공급자의 물건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상업은행 및 IPSP(지급 중개 서비스 제공업체)가 해외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 원천징수 및 납부할 책임이 있다;
- 세무총국은 등록·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해외 공급자의 이름과 홈페이지 주소를 상업은행 또는 IPSP의 본점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상업은행 본점은 해당 해외 공급자 명단을 지점에 통보하여, 해외 공급자의 거래대금 지급 시 납세 신고,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할 책임이 있다;
- 해외 공급자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상업은행 또는 IPSP가 원천징수 또는 대신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상업은행 또는 IPSP가 해외 공급자에게 송금되는 금액에 대해 감시를 할 책임이 있으며, 매월 10일에 정기적으로 해당 정보를 세무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 상업은행 및 IPSP가 해외 공급자에게 송금한 대금의 신고, 원천징수, 지급 및 감시는 세무총국이 상업은행 또는 IPSP의 본점에 통보한 날부터 실시한다.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Park Eun Sil
Tax Manager
+84 90 220 4587
eunsiipark@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Making an impact since 1991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